

등록번호	취업지원과-8426
등록일자	2016.5.30.
결재일자	2016.5.30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일자리연계팀장	취업지원과장	기획재정국장	
이보연	김성두	이종서	05/30 한수경	
협조				

서울형 뉴딜일자리

2016년 시민일자리설계사 추가 선발 계획



기획재정국
취업지원과

2016년 시민일자리설계사 추가 선발 계획

2016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중 시민일자리설계사의 기간만료,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되어 전문자격을 가진 시민일자리설계사를 추가 채용하고자 함.

1 추진 근거

- 2016년 뉴딜일자리 추진계획(일자리정책과-1108, '16.1.20.)
- 2016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

2 사업 개요

선발분야 및 직무

- 선발 사유

16년도 시민일자리설계사 선발자 중 중도퇴사 및 기간만료자의 발생으로
신규 인력 채용 필요

※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총 11개월까지만 참여 가능

- 선발 내역

구분	분야	근로형태	채용인원	근무기간	근무부서	직무
서울형 뉴딜일자리	시민일자리 설계사	기간제 근로자	3명	6개월	취업지원과	취업상담 보조 특성화고 파견근무 등

■ 자격 요건

- 직업상담사 자격 취득자(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)
-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

지원신청 배제대상

-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
- ② 18세 미만자
- ③ 현재 취업 상태인 자
- ④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(주택, 토지, 건축물) 합계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2억을 초과하는 자
- 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(중도 퇴직자 포함)
 - 11개월 미만 참여자는 11개월이 될 때까지만 참여 가능
 - 시민일자리설계사 참여기간은 총 2개연도를 초과할 수 없음
- ⑥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(휴학생 포함)
 - 단, 대학교(원) 수료생, 졸업예정자, 유예자, 방송통신대학, 사어비대학,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
- ⑦ 공무원 연금, 군인연금, 사회연금 수령자
- ⑧ 신청서,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- ⑨ 기타 지병·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
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

※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■ 근로 조건

- 기 간 : **2016. 7 . 1 . ~ 12 . 31 . (6개월)**
- 근 무 지 : **중구일자리플러스센터,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상담실**
- 근 무 일 : 주5일 근무 (토,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)
- 근무시간 : 1일 09:00~18:00 중 6시간(선택 근무)
- 인 건 비 : 시급 6,800원, 일급 41,000원(출장비,식비 각 5,000원)
주휴수당(1주 만근시), 월차수당(1월 만근시) 지급
- 4대보험 의무가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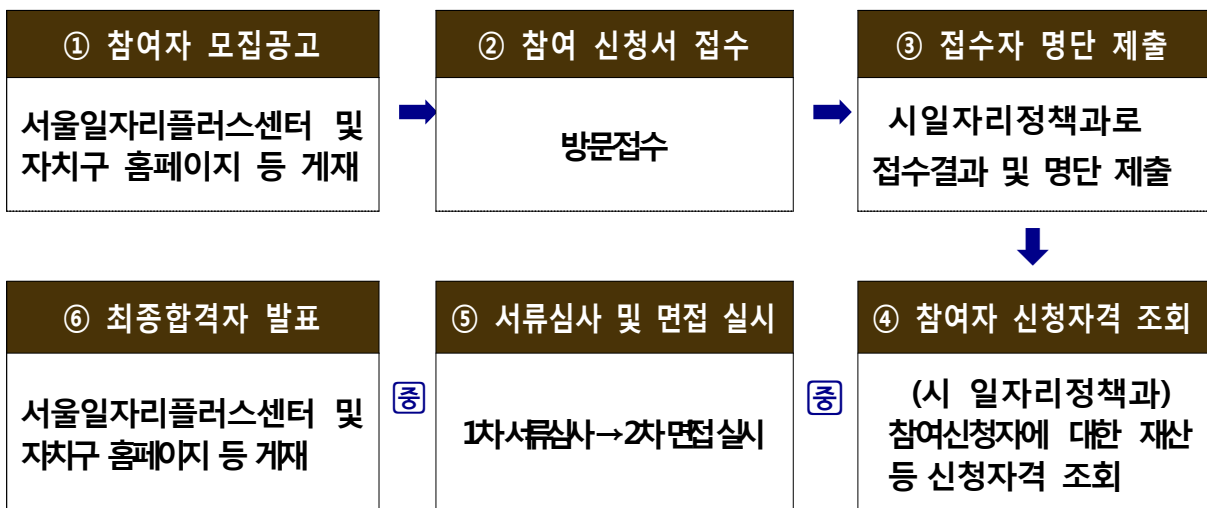
■ 근로 내용

-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상담사 업무 보조
 - 구인.구직등록, 취업상담 및 알선업무
 -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교육 및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
 -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교육(월 1회 이상)
 - 상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부여(직무교육 3시간 이상 수료후 부여)
- 취업취약계층 조사 및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비스
 - 관할 통.반장, 종합사회복지센터 등 활용 조사 → 서비스대상 리스트화
 - 대상별 상담일정 작성(본인동의) → 상담 실시(직접방문 또는 센터 내방)
- 자치구별 특성화고 지원팀 구성 및 운영
 - 자치구 내 특성화고등학교 파견 근무 → 취업 서비스 제공
- 개인별 상담일지 작성

3

세부 추진 계획

■ 선발절차



■ 선발 기준 및 방법

- 신청자격을 갖추고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**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 순으로 선발**

- 1차 서류전형 → 2차 심층면접

※ 서류전형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서 면접 일정 및 장소 추후 안내

■ 선발기준 점수표

항 목	내 용	배점	평가기준
재산상황 (건축물, 주택, 토지 과세표준액 합산) ※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를 제외한 금액	. 5천만원 이하 : 20점 . 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 : 15점 . 1억원 초과~1억5천만원 이하 : 10점 . 1억5천만원 초과~2억원 이하 : 5점 ※ 2억원 초과자는 배제	20	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(일자리정책과에서 통보)
부양가족수 (세대주·동거인 제외)	. 3명이상 : 30점, 2명 : 20점, 1명 : 10점 (65세 초과자 또는 18세 미만자에 한함) ※ 부양가족중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자 및 18세 이상 65세 이하자는 제외 (단,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장애인, 근로무능력자는 부양가족수에 포함)	30	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등록부, 건강보험증 사본 확인
가점사항 (취업 취약계층)	.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여성, 여성세대주 (단독세대 제외) 10점 .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. 장애인 및 가족 10점	10	별도제출서류 (중복 가점 불가)
감점사항 (본인 실업급여 수령여부)	. 본인 실업급여 수령자 : -10점	-10	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(일자리정책과에서 통보)
전 문 성	. 직업상담 전문 지식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	10	
	. 직업상담 관련 경력 3년 이상 15점, 2년 이상 10점, 1년 이상 5점	15	경력증명서 제출
과제해결능력	. 문제의 이해력, 해결의 논리성, 의사결정 능력 (판단력)	15	

※ 선발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 다음순서로 우선선발

재산 > 전문성 > 취업취약계층 > 부양가족수 순 우선선발

※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할 경우, 미달된 인원으로 사업 추진

※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, 예비 참여자를 선발하고 결원발생시 즉시 채용

■ 구비서류

- ① 사업참여 신청서(홈페이지 게시 및 방문접수 장소 비치)[붙임4]
- ②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 동의서 [붙임5]
- ③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(경력이 있는 경우, 경력증명서 제출)
- ④ 구직등록필증 → 자치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
- ⑤ 주민등록등본(서울시민임을 확인, 부양가족 수 확인)
- ⑥ 건강보험증 사본(직장가입자 여부로 현재 취업여부 확인)
- ⑦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모두 있는 경우 제출 면제)
- ⑧ 가점 증빙서류(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)

■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또는 부적격자 판정시 선발 취소 및 제외될 수 있음
-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자료는 비공개로 함

4 행정 사항

-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적격 여부 심의 : 총무과
-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및 면접 후 합격자 통보 : 총무과
-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: 취업지원과

붙임 : 채용공고문 (안) 1부. 끝.